

표준안

대학교(연구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2015. 3

중 소 기 업 청

○○대학교(연구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연구원)(이하 “대학(연구원)”라 한다) 소속 구성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창업”이라 함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혁신선도기업, 기술집약형기업의 창업을 말한다.
3.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창업활동관련자”라 함은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이 창업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라 함은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이 제2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한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8. “투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한 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출자”라 함은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학(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기술 포함) 등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유가증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 “배당금”이라 함은 대학(연구원)이 주주의 지위로서 획득하는 이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11. “수익금”이라 함은 대학(연구원)이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에서 출자금 원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창업지원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으)로 한다.

제4조(창업승인신청의 자격)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 후 3년 이상 연속하여 근속한 자
2. 3년 미만의 근속한 자 중 대학(연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창업대상기술)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이 창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창업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학(연구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
- ②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이 근무 중에 개발한 기술
- ③ 대학(연구원) 소속 구성원이 창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의 기술

제6조(창업 등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연구원)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또는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속 학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대학(연구원)과 창업자간의 관계,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신청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의 심의 및 승인) ① 창업신청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는 제8조에 의한 창업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참여) 신청서
2. 창업 사업계획서 또는 창업기업 참여 계획서
3. 창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최소 근속 기간 등)

② 창업신청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는 창업심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휴직 또는 겸직 여부
2. 겸직 허가 시 기업활동시간과 교육연구활동시간의 비율과 그에 따른 보수

③ 주관부서의 장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인사, 교무, 기술이전계약부서, 단과대학, 소속학과 등)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여 조치(인사발령 등)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창업 승인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창업신청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겸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복직 시 지분보유에 관한 사항
3. 개발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5. 창업 승인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창업완료 및 보고의무) ① 창업자는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창업기업의 활동내역을 주관부서에 매 1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창업활동관련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 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이전) ① 창업자가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연구원)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창업자가 창업대상기술을 이전받거나 동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기술의 이전 또는 실시권 부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 및 겸직) ① 창업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는 창업 또는 창업참여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고 겸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휴직기간은 1년 이내, 겸직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의 경우 연장 회수는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휴직 또는 겸직이 종료되는 창업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가 휴직 또는 겸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이전에 주관부서에 휴직 또는 겸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및 겸직된 창업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총장(원장)은 겸직 및 휴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직) ① 창업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1개월 전에 총장(원장)에게 복직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창업승인의 철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창업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 대학(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복직일 15일 전까지 원상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휴직이 종료되는 창업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창업경력은 대학(연구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력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하는 경우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은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업자의 직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분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인프라 지원) ① 창업승인 확정일로부터 창업기업에 대하여 대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원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실행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원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지원과 성과배분) ① 총장(원장)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할 수 있고, 자본공개모집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본모집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조성한 자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규모는 창업기업 설립자본금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자회사의 경우에는 100%까지 출자할 수 있다.
- ④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 및 기타 과실금은 제3조에서 정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장(원장)은 5%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 지분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⑦ 창업자의 재정적 기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술료) ① 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 총장(원장)은 창업자에게 기관 보유 기술,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이하 “개발기술”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개발기술의 활용·실시·허용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한다. 다만, 총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술료는 당해 기술 개발에 소요된 연구비(창업기업투자분, 인건비 및 개발보전비는 제외) 상당액을 말한다.
- ④ 제2항의 기술료 징수시기는 창업기업이 당해 개발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술료 징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의 허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료는 예산 및 회계 등 제3조에서 정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창업예비연구 및 창업 휴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연구결과(지식재산권 등) 및 참여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출원 전에 주관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직무발명으로 판단된 연구결과는 대학(연구원)과 창업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소유 한다.

⑦ 창업자 또는 창업활동관련자가 휴직 및 겸직기간 만료, 퇴직 후 창업 휴직 및 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허용을 요청할 경우 총장(원장)은 위원회 심의 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 및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연구원)의 시설물 사용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직접비에 한하여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이때의 비용산정기준은 대학(연구원) 내부 구성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한다.

③ 대학(연구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총장(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총장(원장)은 창업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

(연구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연구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총장(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8조(창업 승인의 철회) ① 총장(원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대학(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대학(연구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제10조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7. 창업겸직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용 결정 및 휴·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5. 창업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② 창업자는 승인기간 동안 당해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학(연구원)의 규정을 준용한다.